

# 정부는 지도지침을 통해 공짜노동을 근절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토대로 중소·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.

## 1. 관련 기사

- 4.9.(목) 서울신문(온라인), ‘공짜노동’ 막는 지침 시행 첫 날...업계 “혼란”. 노동단체 “맹탕”

## 2. 설명 내용

- 지난 12월 30일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‘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’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, ‘26년 상반기 근로기준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음
- 포괄임금 오남용은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정액급제 개선 등과 함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·관리를 제도화하는 한편,
  - 중소·영세사업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을 병행·확대하기로 하였음

### ※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, 노사정 합의사항('25.12.30.)

-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(정액급제 개선 등)\*,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·관리 제도화\*\*('26년초, 「근로기준법령」 개정 추진)
- \* 노동자 동의+불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 허용(사전에 수당을 포함해서 약정하되 약정시간에 미달해도 전액을 보장하는 반면,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차액 지급)
- \*\*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및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 발생 시 근로일별 그 시간수 기재
- 포괄임금 개편 컨설팅 제공, 노동시간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정부 지원 병행·확대 추진

- 이에 따라 금번 시행되는 「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(이하 ‘지침’)은 **현행법과 판례 내용을 토대로 “포괄임금 계약만 하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다”**라는 현장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음
- 지침 시행을 계기로,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따른 **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부당한 노동관행이 적극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**

**〈「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」 주요 내용〉**

- ① **현행법상 임금대장.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.관리 의무를 명시하고,**
- ② **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(정액급제), 연장근로수당.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(정액수당제)하여 산정.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,**
- ③ 또한 **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음**

- 나아가,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,
- 노사정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제도 개선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·영세 사업주 등을 위해 ‘포괄임금 개선 컨설팅(일터혁신 상생 컨설팅)’, ‘민간 HR 플랫폼’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
- \* 접수처: 일터혁신 플랫폼([www.kwpi.or.kr](http://www.kwpi.or.kr)) 등
-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사무관	변재연 (044-202-7541)

